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364

발의연월일: 2020. 9. 29.

발 의 자:최종윤·최혜영·김진표

임오경 · 이용빈 · 인재근

박홍근 • 윤준병 • 허종식

한준호 · 장경태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재 노숙인 시설의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은 「민법」상 절차에 의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민법」상 시설의 장은 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자격이 있을 뿐 유류금품 처리 주체가 아니며, 유류금품 액수에 상관없이 모두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비효율적임.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 유류금품은 「민법」상 규정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소관법률 규정에 따르도록 간소화하고, 시설의 장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시 그 사망자의 유류금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에 입소된 무연고 노숙인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의 장에게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 나.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소액의 유류금품에 대해 「민법」 상 처리절차의 예외규정을 마련해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1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2(유류금품의 처분)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사망 노숙인의 상속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사망 노숙인의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속인, 일 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 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하

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법」 제1034조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들 간에 배당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노숙인시설의 장은 제17조제5항에 따른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금품 등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의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노숙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무연고 유류금의 경우에는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105 3조부터 제1059조에 따라 처리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노숙인복지시설의 등) ① ~ ④ (생 략) <u><신 설></u>	입소·퇴소	제17조(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퇴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 λ] λł \		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소조치 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 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 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의2(유류금품의 처분)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 치・운영자는 사망 노숙인의 상 속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1053조부터 제 1059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사망 노숙인의 잔여재산이 「사 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 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6 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라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민법」 제103 4조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들 간에 배당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경 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 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노숙인시설의 장은 제17조제5항에 따른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금품 등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의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